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1차 |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1차 |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일시 2026.11.16.(월)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	|인사말|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손 솔** 국회의원 (진보당)
	|발 제|	**1.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_박권일** 사회비평가·〈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2. 혐오대응 정책과 차별금지법의 역할** **_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3. 청년세대의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 **_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토 론|	**_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극우리포트 :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필진 **_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상근변호사 **_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前 집행위원장

목차

인 사 말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09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11

손 솔 국회의원(진보당) 13

발 제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17

박권일 미디어사회학자,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혐오대응 정책과 차별금지법의 역할 25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세대의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 35

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토 론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51

<극우리포트: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필진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상근변호사 57

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 61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전 집행위원장

인사말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손 솔 국회의원 (진보당)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민주주의와 평등」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여러분, 공동주최해주신 정춘생, 손솔 의원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서로 부딪치는 가치라고들 합니다.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줄어들고,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민주주의가 처음 태어난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평등한 사회가 곧 자유로운 사회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이자 법치라고 여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한 표씩 갖습니다. 모두가 같다는 것은 누구도 남을 함부로 누를 수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법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힘센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는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는 것을 민주주의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성별이나 장애, 나이와 출신지역,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누군가 배제된다면, 그 사회는 평등을 잃은 만큼 자유를 잃고, 꼭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광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맞선 그 겨울의 광장에는 응원봉을 든 청년, 휠체어를 탄 장애인, 무지개 깃발을 든 성소수자,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고, 그렇게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광장 이후의 민주주의는 그날 함께 섰던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여야 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일부 영역, 일부 사유에 한해서만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처음 권고한 2006년 이후, 올해로 꼭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지난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대표발의했습니다. 고용, 재화·용역, 교육, 행정의 네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둘 이상의 사유가 결합된 복합차별도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담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공청회까지 진행했지만,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기다린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토론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합의를 만들어 가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평등법'이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평등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1월 1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진보당 손솔 의원님과 함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1차 포럼을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박권일·장예정·김경내·심기용·이진혜·정경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당시 광장에서 외쳤던 새로운 세상은 단지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의 존엄이 실현되는 ‘평등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시민들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출신 국가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허위·왜곡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토대마저 위협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민주정부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폭넓은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고 2007년 정부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5일,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시민들의 외침에 답해야 합니다. 손솔 의원님도 '차별금지법'을, 박주민 의원님도 '평등법'을 발의하신만큼,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혐오 대응 정책과 차별금지법의 역할, 청년세대의 가짜뉴스 인식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포럼이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와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애써오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이미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사회도 거듭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축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이 법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끊임없이 왜곡되고 폄훼되었습니다.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을 보장하자는 요구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일처럼 호도되었고,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혐오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고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기보다 반대의 목소리를 이유로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왜곡과 오해를 걷어내고 차별금지법의 본래 취지와 필요성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 연속포럼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우화와 혐오선동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살펴보고, 노동권과 교육권, 건강권 등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평등의 원칙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해 국회에 처음 등원하던 날, 12·3 내란을 막아낸 광장의 청년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외쳤던 민주주의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겨울 광장에는 여성과 청년, 노동자와 농민,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

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 광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이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왜곡을 바로잡고, 평등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원칙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광장에서 시민들과 나눈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발제1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박권일 미디어사회학자,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박권일 미디어사회학자·'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1. 극우란 무엇인가

▶ 극우 연구자 카스 무데:

"극우란 **주류 우익과 달리**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반체제 성향의 우익으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인 국민주권과 다수통치를 거부하는 **극단우익**과, 민주주의 본질은 수용하지만 권력분립 · 소수권리 등은 부정하는 **급진우익**으로 나뉜다." [1]

▶ 극우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학계에서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무데의 정의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학문적 정의들은 대체로 유럽, 미국 상황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한국의 극우 현상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 극우는 비주류?

무데의 정의에서 극우는 "주류 우익과 다른" 것.

그러나 한국은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전 집권정당이자 현 원내 제2당이 극우정당.

▶ 이념적 동질성

다양한 이념들이 공존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반공주의 및 능력주의가 지배이념. 주류 정치세력의 이념은 보수와 극우에 걸쳐있으며, 모두가 민주주의자를 자임하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독재 반대'에만 합의. **→ 최소민주주의**

---

1 강조는 인용자. 카스 무데. 권은하 역. (2021).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13-14

▶ 한국 맥락도 고려한 극우의 재정의:

"극우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우익 이념'이다." [2]

2. 한국의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관계

▶ 극우와 민주주의는 상충

민주주의는 데모스, 즉 인민의 평등을 전제하며 좌파는 불평등을 부자연스럽고 부정적인 현상으로 본다. 반면, 우파는 불평등을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본다[3]. 정의상 극우는 민주주의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극우가 강화되면 민주주의는 약화하며,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극우는 약화한다.

▶ 극우가 탈취한 '공정'과 '민주주의'

극우 정치는 타자와 '우리'를 구별하여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고 '진정한 국민'과 '배신자/비국민'을 나누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다. 유럽 극우 정치가 주로 호명하는 타자는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다. 한국 극우의 경우 좌파, 중국인(조선족, 화교), 호남인 등이 공격 대상이 된다.

혐오표현(hate speech)은 극우정치의 타자화를 일상 담론으로 번역하고, 일상화된 혐오표현은 극우 정치의 차별 · 배제 정책이 극단화하기 유리한 조건을 생산하면서 극우와 혐오표현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202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혐오표현 규제 움직임이 강해지자 극우 정치인들이 직접적인 혐오표현을 피하면서 '공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워 차별을 선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능력주의는 어떻게 극우가 되는가

일베가 혐오를 죄의식 없이 분출할 수 있는 이유는 도덕이 결여돼서가 아니다. 오히려 '도덕 과잉' 때문이다. 과하게 내면화된 이 도덕은 한국사회 지배규범인 능력주의, 곧 '능력과 자격에 따른 불평등'과 '형식적 공정성'이다.

2 박권일. (2025.07.10.). 이준석의 언어는 '독성표현'이다. '우리 안의 극우' 4회. 한겨레.

3 Bobbio, N. (1997). Allan Cameron(trans). Left and Right: The Significance of a Political Distin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공정'이라는 가치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진보좌파의 지향이 **'공정한 평등'**이라면 보수우파의 그것은 **'불평등한 공정'**이라는 점에서 내용과 강조점이 다르다.

여기서 일베의 도덕은 '불평등한 공정'이라는 보수우파 이념에 더해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을 자연적 섭리이자 사회적 당위로 수용한다. 약자를 돕는 건 '역차별'을 만들 뿐 아니라 자연 질서와 사회 규범을 어그러뜨리는 악행이 된다. 이제 능력주의는 과잉 능력주의가 되어 최소한의 진보성조차 제거된 위계서열 규범으로 변질된다. 우리는 이런 사상 혹은 사이비과학의 다른 이름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생학(eugenics)이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CEO들의 사상에서도 이러한 과잉 능력주의, 현대적 버전의 우생학이 발견된다[4]. 실리콘밸리에 만연한 이러한 사상을 통칭해 '테크 파시즘(Tech-Fascism)'이라고도 부른다.

▶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킹'되는가

'극우 민주주의자'는 '네모난 삼각형' 같은 형용모순이다. 그러나 이 형용모순이 현실에서는 나날이 팽창한다(유사하게 '극우 페미니즘' 역시 현실에서 가능하다. cf. 마린 르펜). 이것이 오늘날 세계 극우정치의 특징이자 주류화 전략이다.

민주주의가 단지 선거 형식에 머물며 '텅빈 기표'가 될수록 **'민주주의 해킹(democracy hacking)'**이 쉬워진다. 여기에 능력주의가 결합되면 민주주의는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자격와 배제의 원리로 변질된다. 서구의 극우가 '주류 백인남성 등 과거 특권집단의 지위 회복'에 초점을 둔다면, 한국의 극우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 과잉 능력주의'로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극우, 특히 지금 한국 극우에게 능력주의는 반공주의보다 핵심적인 요소다. 보통 약자를 배제하자고 말하면 지탄을 받지만, 능력주의를 이용하면 약자배제를 '공정'과 '형평'으로 바꿔치는 마술을 부릴 수 있다. 그렇게 능력주의는 약자배제의 편리한 무기가 되었다.

▶ 극우화와 민주주의 수준

'극우가 강화되면 민주주의는 약화하며,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극우는 약화한다'는 말은 일반론에서 옳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어긋나 보일 수 있다. 북유럽 선진국처럼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도 극우정당이 약진하고 배외주의가 격화하는 등 극우화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

4 Gebru, T., & Torres, Émile P. (2024). The TESCREAL bundle: Eugenics and the promise of utopia through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First Monday, 29(4)

▶ 극우화와 불평등 정도

극우화와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민주주의 선거제도 및 삼권분립을 넘어 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높은 삶의 질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형식적 민주주의 · 절차적 민주주의와 구별해 실질적 민주주의나 효과적 민주주의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 실질적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평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더 평등하다.

▶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불평등 선호

팬데믹 직후 등의 예외적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EIU 민주주의 지수를 기준으로 세계 20위 권대에서 30위권을 매년 오가고 있다(2025년 32위). '세계가치관조사(WVS)'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은 높지만 효과적 민주주의(실질적 민주주의와 유사한 개념)에서는 세계 중위권 이하였다[5].

또한 한국은 소득 평등을 묻는 문항("소득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력 등에 따라 더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서 **불평등에 압도적 선호**를 보인 예외적인 국가였다.

*WVS 6차 조사(2010~2014년) 결과: 독일은 평등 57.7%, 불평등 14.6%. 미국은 평등 29.6%, 불평등 36.2%. 한국은 평등 23.5%, 불평등 58.7%. 7차 조사(2020)에서 한국은 평등 찬성 12.4%, 불평등 찬성 64.8%[6].

▶ 설명의 한계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극우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곧, 사회경제적으로 더 평등한 나라에서도 극우화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익숙한 가설을 당혹스런 결론으로 이끈다. "신자유주의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이 극우화의 원인"이라는 경제 결정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미비가 극우화의 원인"이라는 레짐 결정론적 접근도 오늘날 극우 창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대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우화의 여러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한국처럼 형식적 민주화 완료 후 실질적 민주화가 지체된 나라는 물론이고, 북유럽이나 서유럽처럼 실질적

5 로널드 잉글하트 · 크리스찬 웰젤. 지은주 역. '민주주의는 어떻게 오는가'. 2011. 344.
6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이데아. 176-178.

민주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나라에서도 체제 신뢰는 약화되는 중이다. 극우는 이 불만의 에너지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변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가치는 놀랍게도 '민주주의'다.
(극우의 원인 내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논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생략)

3.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담긴 시대적 의의

▶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시대적 의의

차별금지법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고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은 법이다. 법의 정당성은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며 다수 시민이 찬성하고 있지만, 소수자 혐오세력 눈치를 보는 정치권의 외면으로 오랫동안 법안이 표류해왔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사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와 열망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와 극우 연구자로서 이는 놀라운 일인데, 한국은 지표상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능력주의가 강하고 불평등 분배 선호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20여년은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이념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음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는 점점 더 강해져왔다. 이는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 잠재력이 결코 낮지 않음을 방증한다.

▶ 극우·혐오표현의 제도적 대응에 완벽한 정답은 없다

유럽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강한 법적 · 제도적 규제를 시도하고 시행해왔다. 반대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에 입각하여 "혐오표현은 법으로 막을 수 없으며 더 많은 표현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방식을 보여준 유럽과 미국 모두, 극우정당의 대약진과 트럼프 시대를 맞았다. 법적 규제를 거부하든 도입하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 사례는 극우 및 혐오표현의 법적 처벌을 놓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반면교사일 수 있다.

▶ 일본 '헤이트스피치법' 10년의 시사점

2016년 제정된 일본판 혐오표현 규제법인 일명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2026년으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선언적 법률이고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시행 전부터 한계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순기능도 있었다. 법 시행 이후 그동안 배외주의 혐오표현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던 경찰과 사법부에서 변화가 생겨났다고 한다. 법 자체로서의 효과도 없지 않았다. 혐오표현해소법이 "민법 709조(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해석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즉 민사재판에서 차별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되기 쉽게 되었다는 것이다.

▶ 차별금지법, 극우를 막는 저지선 될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은 법적 강제력 차원보다 상징적 · 문화적 차원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처벌 조항이 없어서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헤이트스피치해소법' 사례처럼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근거로 인용된다든가 하는 등 간접적인 차원에서 차별과 혐오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차별금지법은 법적 규제력보다 사회 전반에 일종의 **'상징적 방지턱'**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끝)

발제2

혐오대응 정책과 차별금지법의 역할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혐오 대응과 차별금지법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들어가며

혐오표현, 혐오발언, 혐오규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지는 이미 여러 해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 앞 '일간베스트' 회원임을 주장하는 이들의 폭식 시위 등 상징적인 사건들을 계기로 혐오발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등장하고 사회문제로 여겨져 왔다. 새삼스러운 주제는 아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정책에 대한 기대는 크게 2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내란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파면 이후 바라는 세상은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였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과정은 단기간에 오지 않았고 123일간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지킨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로 그 광장에서 꼽힌 파면 이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과제는 '모두의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위한 법과 제도이고 이는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기도 하였다. 이 결과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중간리포트와 최종결과리포트에서도 동일한 결과[1]였으며 여러 종합기사들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2]. 123일 동안 극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소위 '제1차 남태령대첩'에서도 농민과 청년, 여성, 성소수자의 연대의 힘이 빛나던 순간으로 기억된다. 시민들은 이번 탄핵광장만큼은 주요 정치인들도 함께 겪었다고 기억한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혐오선동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혐중집회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거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국정과제 세부전략에는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통한 혐오표현 대응력 강화"가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3].

그러나 이런 기대들로 출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의 '이주노동자 임금 송금' 발언, SNS상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언

1 https://talk.bisang1203.net/pages/10million-connections-report.

2 조연주, "차별·혐오 없는 존엄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광장 시민이 꼽은 '1위 과제', 노동과세계, 2025년 5월 27일,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107.

3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81

급, 그리고 이후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혐오발언을 한 적 없다는 반응들로 인함이다. 이번 일련의 과정은 나타나듯 한국 사회는 아직 '혐오', '혐오표현', '혐오발언'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되었다.

국내 법제도상 혐오표현 정의의 필요성

혐오는 무엇인가. 혐오표현은 무엇인가. 현재 법률상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부재하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44조의 7[4]조항이 그 정의를 규정을 마련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조항은 혐오표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불법정보로 일컫고 있다. 또한 그 사유에 있어서도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 8개로 매우 좁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은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두고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바로 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사유 중 재산상태, 소득수준은 통상적인 차별과 혐오 논의에서의 사유와는 조금 다른 생소한 사유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그 범위는 해당 법률의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지방공무원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서도 이에 한정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 필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논의 없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정의 규정이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규정처럼 작동할 여지가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그 출발은 혐오표현에 대한 대사회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정의규정, 사유의 나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26년 11월 초 기준으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혐오표현'이라는 언급이 포함된 법률의 제·개정안은 29건에 이른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는 국내에서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5]. 비단 한국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국가 공동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 어떤 역사적 사건에 의

4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5 홍성수, 혐오표현 규제, 이제 첫걸음을 뗐다 [홍성수 칼럼], 한겨레, 2026년 9월 30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80086.html.

함인지에 따라 다양한 맥락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국제적인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도 하다. 가령 한국에서의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조롱과 멸시적 발언은 10여년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배경이 작용한다. 한국에서 혐오로부터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할 필요는 여느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다르다 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보호대상을 어느 집단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몇 건의 대대적인 사건으로 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차별과 혐오에 대한 더 넓은 시야에서 분석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오표현은 자칫 '혐오스러운' 비난들로 이해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고 할 때 그 집단의 속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이해되기 쉽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발언과 SNS 언동들에 대한 논란도 바로 이러한 지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해도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단 하나의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하였어도 유엔 자유권규약도 제19조 표현의 자유와 제20조 2항 혐오표현 금지 관련 항목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이를 바라 봐야 한다는 언급,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종적 증오에 근거한 상상의 전파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6].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2012년 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을 발표하며 표현의 자유와 양립가능한 혐오표현 규제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한국의 상황과 체계에 적절한 규정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혐오표현, 고려되어야 할 속성

국내의 관련 논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2019년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리포트」이다. 해당 자료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 정의한다.

이때 차별을 받는 사유, 그리고 그 집단의 특성은 일시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혹은 상당한 기간 차별의 경험이 누적되어[7] 온 집단을 일컫는다. 인종, 성별은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적지향은 국내는 물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차별의 사유로 작

6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제50호, 2015년 12월, 296쪽.

7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리포트, 2019, 12-13쪽.

동하고 있고 국가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등 지역 혐오와 결합되어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경우에 따라 실제 차별로 나아가는 사안들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기도 하다. 부적절하고 사회적 해악이 있는 모든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할 때, 혐오표현의 특성을 포착하고 이에 맞춘 대응책을 고려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혐오표현만이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문제적 표현들이 아니다. 각 유형에 따른 해악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규정하는 혐오표현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그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8].

혐오선동에 가로막힌 혐오표현 논의

선술하였듯 국가마다 차별과 혐오의 양상이 다르고, 국제적인 완벽한 표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특정 사유들이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명백한 차별의 이유로 작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성소수자 차별, 성소수자 혐오선동이 극심히 나타나고 있기에 오히려 보호받아야할 집단에서 배제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1%가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통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부고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남겼고, 동대문구청의 성소수자 체육행사 대관 거절 사건,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성직자가 교단으로부터 출교당하는 사건과 같은 일이 매해 벌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을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제작하던 혐오·차별표현대응가이드북에서 초안에 버젓이 등장하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전체 삭제했다.

차별과 혐오로부터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논의되는 혐오대응 정책들에서, 그 사유의 나열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누락되는 과정은 명백히 차별과 혐오의 연장선에 있다. 불과 지난해에도 혐오표현 규제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조인철 의원은 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이 일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재발의하겠다며 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지고 인권·시민사회단체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삭제 후 재발의는

8 조혜인, 공동학술대회 : 차별금지법 권고 20년 : 한국사회 현재적 쟁점과 차별금지법, 84쪽.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쏟아졌기에[9] 그러한 사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법안은 다시 발의되지 않았다. 누군가를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이 논의 자체가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공론장의 지형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놓인 지형과 일치한다. 결국 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는 이들이 이 모든 논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준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상에서 제시한 접근방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본다면,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10]." 국내 혐오표현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홍성수는 2015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문에서 이미 이렇게 주장한다. 위 언급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표한 라바트 행동계획에서도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국가는 혐오 선동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예방 및 징벌적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해야 한다[11]." 그 취지는 모두 동일하다.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하고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 공론장이 형성된 사회에서 혐오에 대한 논의도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그러하듯 차별에 대한 정책적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혐오규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법률상의 제재, 특히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규제는 극히 드문편이다. 증오선동을 통한 물리적 폭력이 야기되는 정도, 제노사이드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차원에서 형사처벌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그 이전 단계의 혐오표현 등에 대해서는 비법률적 규제에서 출발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에서 2023년 발간한 「소수자의 권리 보호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한 실무 지침서」는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많은 국가들이 법적 조치 이외의 측면에서 그 대응책을 고민해왔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때 그 이외의 대응책이란 대부분의 경우 차별시정기구, 평등기구, 즉 국내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의 역할로 둔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구로서 더 잘 역할하도록 세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근래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인적 후퇴가 많은 논란이기는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국내 평등기구이고 그렇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는 국내 반차별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한편으로는 혐오표현의 규제 논의도 결국은 혐오표

9 [논평] 혐오에 굴복하면서 혐오를 규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거둘 때 '성적 지향' 삭제 위해 정보통신망법 발의 철회한 조인철 의원에 부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6년 6월 6일, https://equalityact.kr/250606-2/.

10 홍성수, 위의 논문, 319쪽.

11 Rabat Plan of Action, paragraph 26.

현이 다른 차별행위와 밀접하게 연결[12]된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혐오표현으로 발현되고 그것이 심화되어 차별행위가 되고, 폭력행위로 나타나면 끝내는 제노사이드까지 나아간다는 혐오의 피라미드 이론은 이 지점을 드러낸다[13]. 그러므로 혐오표현규제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차별시정기구가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사회 전반의 차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4]. 그러기 위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한민국도 비준을 논의하고 있는 ILO 190호, 일터의 차별적 괴롭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내 이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꼽히기도 한다[15].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비단 혐오대응 정책 설계를 위한 기본법으로서만이 아니라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이 결부되는 많은 법과 정책을 위해서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이 놓인 지형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저 특정 단체나 진영의 의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사, 신뢰할만한 여론조사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결과 늘 과반의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지난 윤석역 퇴진광장에서 발언자의 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랐다. 국내에서만 이런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권고, 유엔 조약 기구 14차례, 지난 4번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모든 회차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권고받았다. 국내외를 막론한 한국 정부의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이 자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20년, 심지어 그 이전 김대중 정부에서 '차별대우금지'를 국민대화합 공약으로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했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년을 훌쩍 넘긴다. 그 지연의 이유는 여러 정치·사회적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보수 기독교의 극렬한 반대이다. 특히 2013년 김한길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철회 사퇴 이후에는 명확하게 보수 기독교의 공세가 제정의 지연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 마침내 제정된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한국사회를 뒤덮은 차별과 혐오, 특히 성소수자 차별선동이 더 이상 유의미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럴 수 있는 정치를 바라는 마음은 차별, 혐오선동 사

12 홍성수, 위의 논문, 304-305쪽.
13 조혜인, 위의 자료, 2쪽.
14 홍성수, 위의 논문, 305쪽.
15 조혜인, 「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평등·비차별의 관점에서 본 ILO 제 190호 협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2026, 74-77쪽.

건에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호명하고 있다.

마치며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혐오 대응 정책의 마침표가 될 수 없다. 차별금지법의 핵심 목표 자체가 혐오대응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혐오관련 사건들마다 차별금지법만이 대안인 것처럼 호명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이 혐오의 모든 대책으로 통할 것이라 생각치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혐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혐오와 차별의 기운을 걷어내고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오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법률과 제도마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집단의 기준이 다르거나 차별에 대한 정의규정을 달리가는 것이라 통일된 기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국정과제에서도 언급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발제3

청년세대의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

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조사개요

전국 만 18~39세 남녀 1,000명 조사
조사기간 : 2026년 7월 8일 16:00~12일 13:00 / 조사기관 :㈜에스티아이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패널 웹조사
표본 추출 틀	데이터스프링코리아 리서치 패널(온라인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구축한 리서치 패널)
표본 추출	비례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
가중치	성별·연령별·지역별 셀가중
가중 기준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응답률	9.1% (11,031명 연결 중 1,000명 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최대 허용 ±3.1%p (조사기관 제시값)

조사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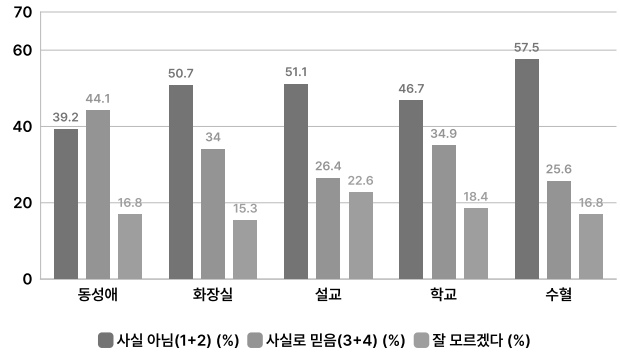
Q49: 다음 주장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1 전혀 아니다 / 2 별로 아니다 / 3 어느 정도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9 잘 모르겠다

문항	제시한 주장
a 동성애 확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다
b 여성화장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c 설교 처벌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d 학교 취업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경비·관리 직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e 헌혈 수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에이즈 감염인의 헌혈도 그대로 수혈받아야 한다

- 신뢰율: 3+4 응답자 비율 / 통합지수: 3개 이상 문항의 1~4점 평균 / 판단유보: 9번(잘 모르겠음) 응답

전체 응답 분포

전체 N=1,000 · 사실 아님 / 사실로 믿음 / 판단유보, 가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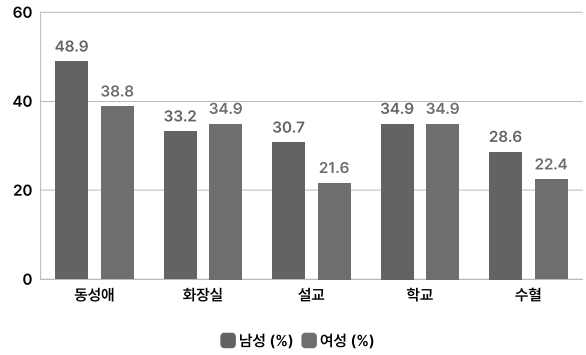


a 동성애 확산
b 여성화장실 남성 출입
c 목사 설교 처벌
d 성범죄자 학교 취업
e HIV 감염인 헌혈 수혈

동성애 확산을 믿는 비율이 44.1%로 가장 높음.
설교 처벌에서는 판단유보가 22.6%로 가장 많음.

성별 차이

전체 N=1,000 · 각 집단의 판단유보 포함 · 사실로 믿음(3+4), 가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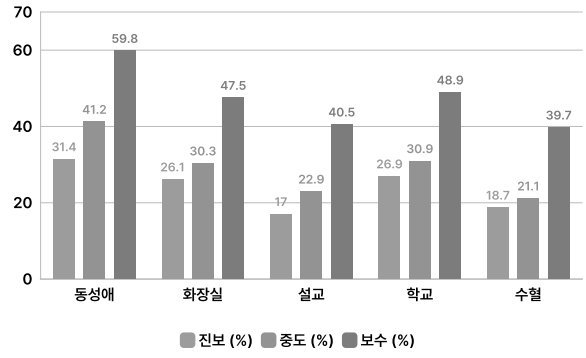


a 동성애 확산
b 여성화장실 남성 출입
c 목사 설교 처벌
d 성범죄자 학교 취업
e HIV 감염인 헌혈 수혈

동성애 확산·설교 처벌은 남성이 높음. 여성화장실은 여성이 조금 높고, 학교 취업 문항은 차이가 거의 없음.

이념별 차이

전체 N=1,000 · 각 집단의 판단유보 포함 · 사실로 믿음(3+4), 가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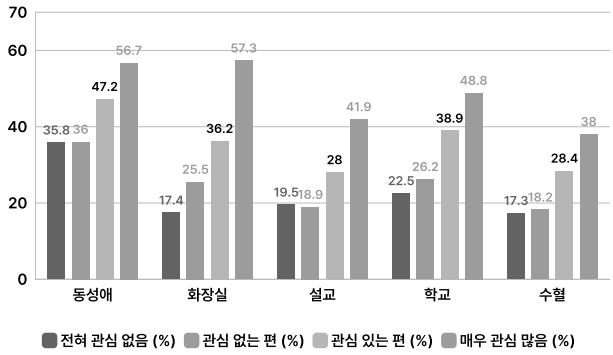


a 동성애 확산
b 여성화장실 남성 출입
c 목사 설교 처벌
d 성범죄자 학교 취업
e HIV 감염인 헌혈 수혈

동성애 확산 : 진보 31.4%, 중도 41.2%, 보수 59.8%. 다섯 주장 모두 보수 집단에서 높음.

정치적 관심에 따른 차이

전체 N=1,000 · 각 집단의 판단유보 포함 · 사실로 믿음(3+4), 가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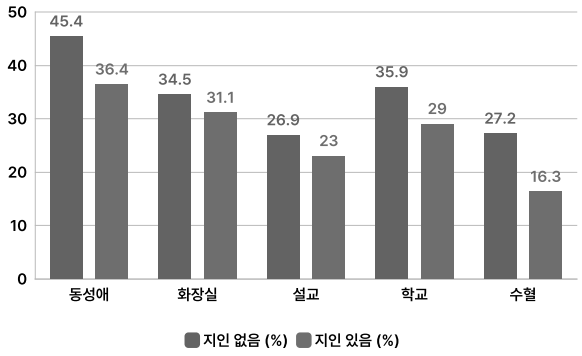


a 동성애 확산
b 여성화장실 남성 출입
c 목사 설교 처벌
d 성범죄자 학교 취업
e HIV 감염인 헌혈 수혈

정치에 매우 관심 많은 집단이 가짜뉴스 주장에 가장 높은 38.0~57.3%의 신뢰율을 보임.

정치적 지인 유무에 따른 차이

전체 N=1,000 · 각 집단의 판단유보 포함 · 사실로 믿음(3+4), 가중 %



a 동성애 확산
b 여성화장실 남성 출입
c 목사 설교 처벌
d 성범죄자 학교 취업
e HIV 감염인 헌혈 수혈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집단은 다섯 주장을 덜 믿음.
동성애 확산은 지인 없음 45.4%, 있음 36.4%.

문항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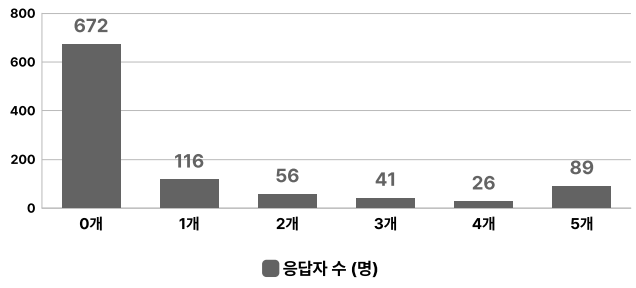
문항 간 스피어만 상관계수 · 전반적인 믿음 수준을 통합지수로 살펴본다

문항	동성애	화장실	설교	학교	수혈
동성애 확산	1.00				
여성화장실	.51	1.00			
설교 처벌	.57	.68	1.00		
학교 취업	.51	.63	.63	1.00	
헌혈 수혈	.54	.61	.62	.67	1.00

상관 계수 .51~.68 / 신뢰도 α=.880, ω=.883.

통합지수와 판단 유보

통합지수 평균 2.19점 · 최솟값 1~최댓값 4 · 산출 대상 844명 (3개 이상 문항 응답자의 1~4점 평균)
판단유보 개수별 응답자 수 (전체 1,000명)



이념	평균 판단유보 개수
진보	0.66개
중도	1.18개
보수	0.5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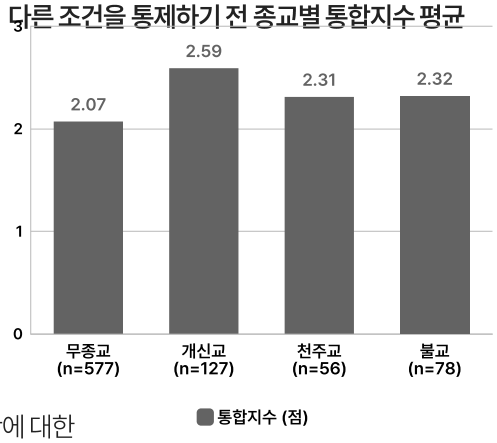
분석 결과 다섯 문항을 모두 판단유보한 응답자 89명. 판단유보는 중도·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다

종교와 가짜뉴스 인식

종교별 가짜뉴스를 사실이라고 응답한 비율

제시 문항	무종교 (700명)	개신교 (143명)	천주교 (60명)	불교 (89명)
동성애 확산	38.3%	**63.8%**	51.6%	53.0%
여성화장실	29.3%	**48.4%**	44.9%	40.1%
설교 처벌	20.9%	**42.8%**	33.3%	35.8%
학교 취업	29.7%	**49.1%**	45.0%	45.9%
헌혈 수혈	21.8%	**34.4%**	34.9%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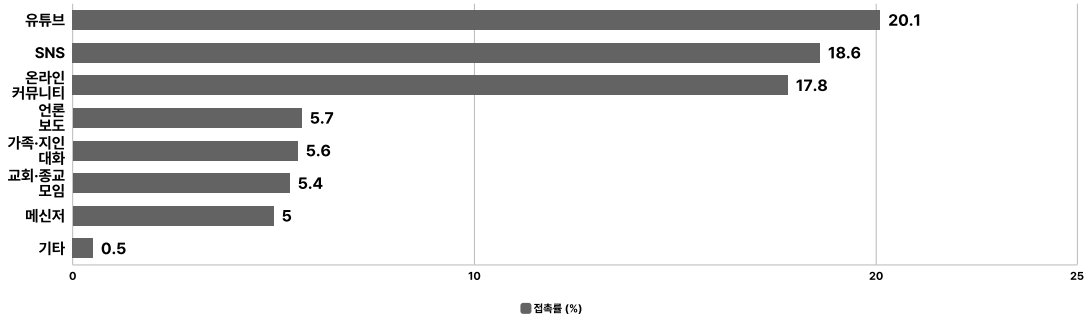
다른 조건을 통제하기 전 종교별 통합지수 평균



종교인 내부에서도 행사 참여·종교 중요성·교리 문자주의·정치판단에 대한 종교 영향이 높을수록 믿음 수준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개신교 내부에서 종교성의 각 측면과 가짜뉴스 통합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r=.22~.31.

가짜뉴스 주장 접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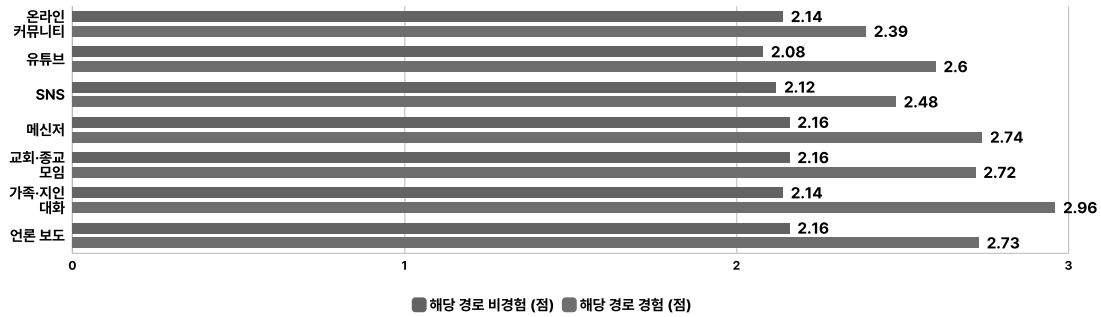
Q50 복수응답 · 전체 N=1,000, 가중 %



분석 결과 차별금지법 관련 가짜뉴스의 주요 접촉 경로는 유튜브·SNS·온라인 커뮤니티로 나타난다.

접촉 경로와 가짜뉴스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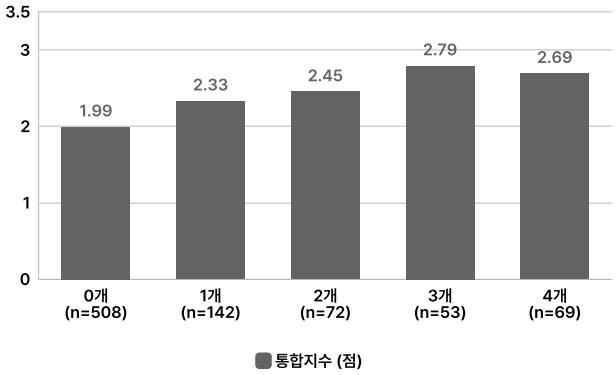
해당 경로 접촉 여부에 따른 통합지수 평균 · 통제 전 비교



분석 결과 가짜뉴스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접촉경로는 가족·지인 대화로, 경험자는 2.96점, 비경험자는 2.14점.

보수 콘텐츠 경험

지난 1년간 경험한 보수 콘텐츠 종류 수(0~4개)와 통합지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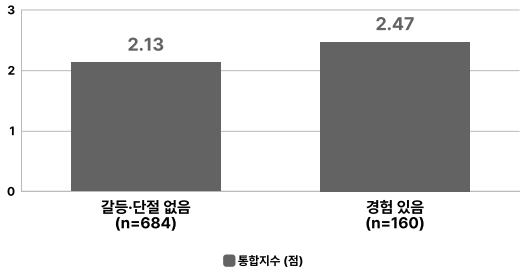


제시한 보수 콘텐츠 문항

- 강한 보수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방송
- 반(反)이재명 반민주당 콘텐츠
- 대한민국 근현대사(건국, 이승만 등)를 보수적으로 재해석하는 콘텐츠
-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콘텐츠

갈등·단절과 가짜뉴스 인식

다른 조건 통제 전. 갈등·단절 경험 여부별 통합지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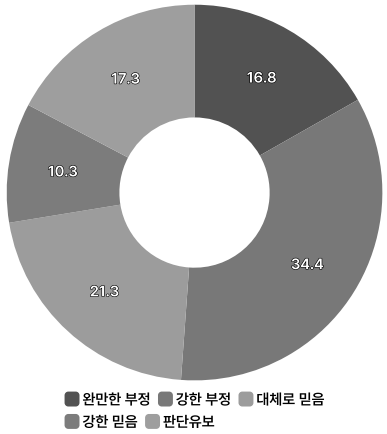


원문항 :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의 갈등 또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부모와의 갈등
- 친구와의 멀어짐, 절교
- 연인과 헤어짐
- (상사, 교사, 교수 등) 손윗사람과의 거리두기
- 기타

분석 결과 갈등·단절을 경험한 집단에서 믿음 수준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잠재계층(LCA) 분석

LCA: 1~4 응답과 판단유보를 함께 사용 · N=1,000 · 가중 비율 / 비가중 n



계층	가중 비율	응답자 수
완만한 부정	16.8%	168명
판단유보	17.3%	173명
강한 부정	34.4%	344명
대체로 믿음	21.3%	212명
강한 믿음	10.3%	103명
모형 선택	BIC 12,461	엔트로피 .880

계층별 가짜뉴스 인식

해당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을 추정확률(3번 또는 4번으로 응답할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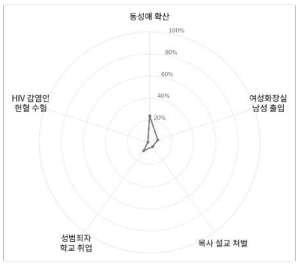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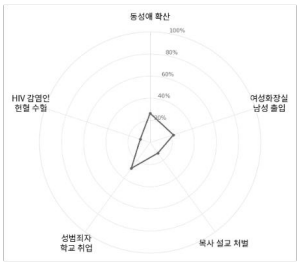
믿음과 판단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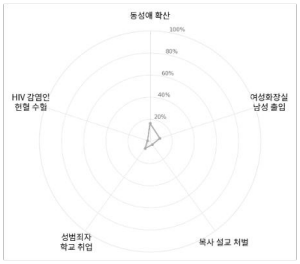
대체로 믿음·강한 믿음 계층은 여러 주장을 폭넓게 수용한다. 판단유보 계층은 가짜뉴스를 부정하는 비율이 크다기 보다는 '잘 모르겠다' 추정확률이 70~91%다.

가짜뉴스 부정과 판단 유보

계층별 레이더 그래프: 사실로 믿을 추정확률(3+4), 0~100% · 외부 특성은 가중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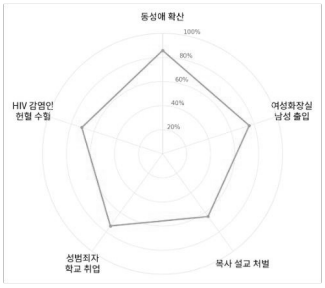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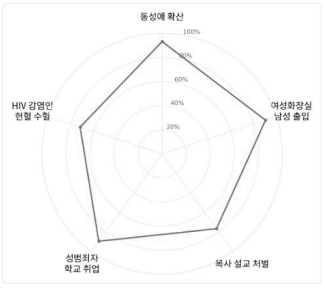
분석 결과

완만부정 계층과 강한부정 계층에서 모두 동성애 확산 믿음 확률은 25%내외로 나타남. 반면 여자화장실 출입, 학교 취업, 헌혈 수혈 주장에서 강한부정 계층의 믿음 확률이 낮음.
완만부정 계층의 성소수자 지인 비율 14.3%, 강한부정 계층의 성소수자 지인 비율은 20.6%임.

대체로 믿음/ 강한 믿음 계층

계층별 레이더 그래프: 사실로 믿을 추정확률(3+4), 0~100% · 외부 특성은 가중 통계





특성	대체로 믿음 · 21.3%	강한 믿음 · 10.3%
보수성 (0~10)	5.49	6.24
개신교 비율	16.5%	35.9%
성소수자 감정온도 (0~100)	45.5	25.2

가짜뉴스 주장을 사실이라 믿는 집단 안에서도 기존 태도와 믿음이 결합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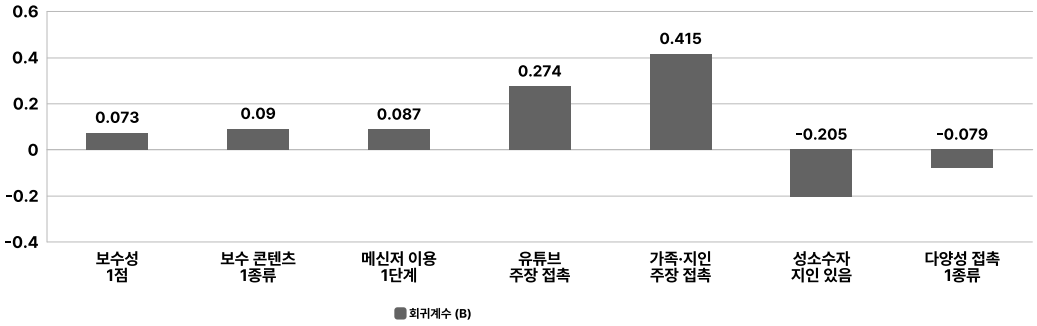
가짜뉴스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수: Q49 통합지수(1~4점, 최소 3문항 유효응답). 가중 선형회귀 · 동일 표본 N=791 / 독립·통제변수를 단계적으로 추가

모형	추가한 독립·통제변수	가중 R^2
M1 사회인구학	성별, 연령대, 학력, 주관적 계층, 지역	.022
M2 정치	이념(0~10), 지지정당, 정치관심	.132
M3 정보환경	유튜브·커뮤니티·메신저 이용, 보수 콘텐츠 경험폭, 가짜뉴스 주요 접촉경로 7개(기타 제외)	.242
M4 종교	개신교 여부, 종교행사 참여, 교리 문자주의, 정치판단에 대한 종교 영향 등 종교성 문항 변수	.264
M5 관계·대화·갈등	성소수자 지인, 다양성 접촉폭, 같은 의견 지인·온라인 정치대화, 정치적 갈등·단절 경험 개수	.289

Ms 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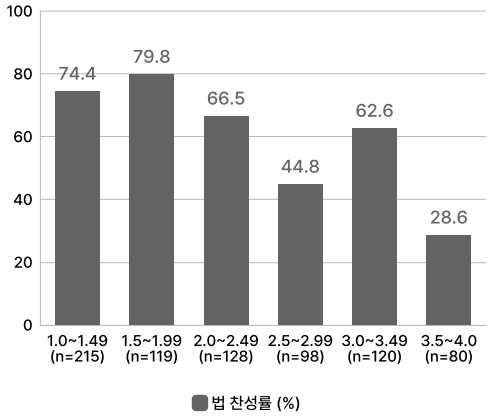
종속변수: Q49 통합지수(1~4점) · N=791



분석 결과	가짜뉴스 인식은 정치성향뿐 아니라 주장을 접하는 경로와 사회적 접촉 경험과도 관련성을 보인다.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Q49 통합지수 구간별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률, 가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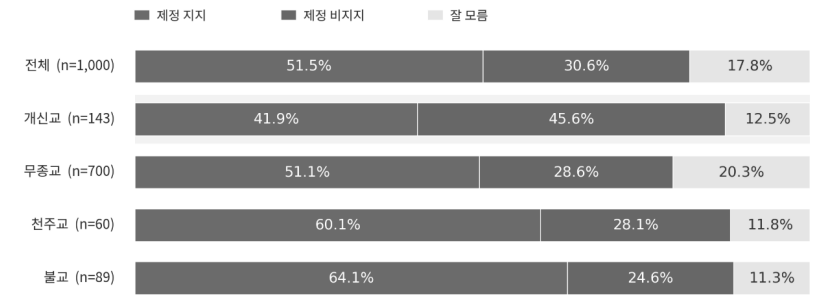


66.1%의 찬성

동성애 확산을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집단 중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비율이다.
즉 찬성층 내부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있고,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는 집단 내부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 통합지수 3.5~4.0점 집단에서도 찬성자가 28.6% 존재한다.

종교별 차별금지법 제정 태도

개신교 응답자는 제정 지지 41.9%, 비지지 45.6%



개신교 응답자의 제정 지지율은 전체보다 낮았지만, 집단 안에서는 지지 41.9%와 비지지 45.6%로 비슷했다. '잘 모름'은 12.5%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회귀분석 모형

종속변수: 법 찬성=1(3+4), 반대=0(1+2). 가중 로지스틱 회귀 · N=717 / Q49 통합지수 1점 상승의 승산비

모형	독립·통제변수	Nagelkerke 의사 R^2	통합지수 승산비	95% 신뢰구간
A	가짜뉴스 인식 통합지수	.121	.491	.412~.585
B	A + 성소수자 감정온도(10점 단위)	.189	.552	.460~.663
C	B + 이념, 지지정당, 성별, 연령대	.301	.608	.498~.742
D	C + 개신교 여부	.305	.623	.519~.762

최종 OR=.623. 즉 가짜뉴스 믿음 통합지수 1점 상승과 차별금지법 찬성 승산 약 38% 감소가 관련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온도·정치성향·성별·연령과 개신교 여부를 함께 고려해도 관련성이 유지된다.
*D모형에서 개신교 응답자의 찬성 승산은 낮게 추정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된다. (95% CI .434~1.082, p=.105)

제언1. 차별금지법 찬성층 내 오해 바로잡기

- **찬성층 내의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동성애 확산을 '어느 정도 사실'로 답한 집단에서도 66.1%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법이 다루는 차별의 영역과 구제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법의 작동 방식을 연결하는 교육안을 마련하고 확산해야 한다.

- **지지자·단체·당원 교육에 팩트 체크를 포함한다**
-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를 돕는다**

제언2. 판단유보 계층과 가짜뉴스 믿음 계층

- **판단유보형 17.3%, 강한 믿음형 10.3%**

판단유보형은 정치관심과 소수자 접촉 경험이 적다.
강한 믿음형은 보수 콘텐츠 경험과 정치관심이 높다.
판단유보층의 생활에도 닿을 수 있는 설명과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 **계층 유형별 질문과 정보 경험에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언3. 온라인과 일상 대화

- **유튜브·가족·지인 접촉의 관련성이 크게 나타난다**

가족·지인 접촉자의 지수는 2.96점, 비접촉자는 2.14점. 최종 회귀계수도 +.415(p<.001)다. 가짜뉴스의 주요 전파 경로인 유튜브·SNS 콘텐츠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비롯해 실제 인적관계의 대화에서도 쓸 문답과 사례를 마련한다.

제언4. 소수자의 삶을 이해할 기회 만들기

- **성소수자 지인과 낮은 믿음 수준의 관련성**

동성애 확산 신뢰율은 성소수자 지인 없음 45.4%, 지인 있음 36.4%. 다양한 집단과의 접촉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으로 이어진다. 소수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야기·교육·만남을 기획하고 법의 영역인 교육·노동·주거·서비스 이용 경험을 함께 다뤄야 한다.

- **실제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 경험과 법의 필요성을 일상의 언어로 전파해야 한다.**

토론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극우리포트: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필진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상근변호사

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전 집행위원장

혐오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닿는가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박권일)에 이어서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극우리포트: 성소수자 혐오부터 내란옹호까지』 필진)

1. 성소수자 운동이 겪어 온 '최소민주주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94년에 만들어진 게이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에서 일하고 있고, 지난해 3월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 낸 『극우리포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자리에서, 발제를 이어 쓰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발제자는 극우에 대한 가장 널리 쓰이는 정의, 곧 카스 무데의 정의가 한국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하셨습니다. 무데에게 극우는 '주류 우익과 구별되는' 반체제 세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정당이 원내 제2당입니다. 극우가 변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극우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시도,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우익 이념'으로 다시 정의하셨습니다. 누가 주류이고 비주류인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려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으로 이해했습니다.

성소수자 운동은 이 진단을 20년 동안 몸으로 겪었습니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2013년에는 민주당 의원 51명이 발의한 법안이 보수개신교의 항의로 철회됐습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 TV 토론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극우의 주장이 주류가 되는 데에는 극우 정당의 집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발제자는 또 한국의 주류 정치세력이 모두 민주주의자를 자임하지만, 실제로 합의한 것은 '권위주의 독재 반대'까지라고 보셨습니다. 이것을 '최소민주주의'라고 부르셨습니다. 독재만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합의 안에서는 소수자의 평등이 언제든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라는 말로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해킹'이라는 개념도 인상 깊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선거라는 형식에만 머물러 속이 빈 말

이 될수록, 극우가 그 말을 가져다 '공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차별을 선동하기 쉬워진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게는 낯익은 장면입니다. '가짜 인권', '역차별', '동성애 독재',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2020년에 만들어진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체의 이름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입니다. 발제자가 이론으로 정리하신 것의 가장 오래된 한국 사례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 '혐오세력'의 이름과 역사

발제자는 차별금지법이 "소수자 혐오세력 눈치를 보는 정치권의 외면으로" 오랫동안 표류해 왔다고 쓰셨습니다.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성소수자 운동의 자리에서 조금 더 길게 써 보겠습니다.
그 세력의 중심에는 보수개신교가 있습니다. 『극우리포트』가 추적한 역사는 이렇습니다. 2003년 시청 앞 구국기도회의 구호는 '반핵반김'이었습니다. 2000년대 뉴라이트는 이념은 갖췄지만 대중운동의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전국 교회 네트워크였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의제가 2007년 이후의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였습니다. '종북게이'라는 말이 보여 주듯, 오래된 반공주의에 동성애혐오를 이어 붙인 것입니다. 이들은 법무부안에서 사유를 덜어냈고, 2013년 법안을 철회시켰고, 거기서 얻은 효능감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성교육과 도서관의 책으로 나아갔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계엄 한 달여 전에 서울 도심에 경찰 추산 23만 명이 모였을 때 구호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혼 반대'였습니다. 12월 3일 밤 당시 여당보다 먼저 계엄을 옹호한 사람은 전광훈이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금지법 반대는 한국 극우에게 여러 의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람을 모으고 이겨 보는 경험을 쌓게 해 준 훈련장이었습니다.

3. 능력주의가 설명하는 것과 남는 것

이제 발제의 중심인 능력주의로 가 보겠습니다.
발제자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 '공정'을 말하지만, 진보가 바라는 것이 '공정한 평등'이라면 보수가 바라는 것은 '불평등한 공정'이라고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육강식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해지면 '과잉 능력주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계에서 약자를 돕는 일은 '역차별'이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악행입니다. 한국 극우에게는 이 능력주의가 반공주의보다 핵심이

라는 것이 발제의 진단입니다. 약자를 배제하자고 하면 지탄받지만, 능력주의를 거치면 그것이 '공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차별금지법 반대의 절반을 정확히 짚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깔린 감정을 제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너희만 힘든 게 아니다. 나도 힘들다. 모두가 각자의 사정으로 힘드니 그것으로 공평하다." 이 감정 안에서는 '차별'이라는 범주가 사라집니다. 모두의 고통이 같은 것이라면, 누군가의 차별을 따로 이름 붙여 금지하는 법은 그 사람들만 챙기는 특혜가 됩니다. '역차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회가 더 복잡해지는 것, 고려해야 할 사람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피로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다른 절반은 능력과 자격의 언어로 말해지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몫을 가져간다"가 아니라 "저들의 존재가 가족과 아이와 나라를 오염시킨다"고 말합니다. 오늘 김경내 연구원의 조사에 쓰인 다섯 개 가짜뉴스가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확산된다, 화장실에 들어온다, 성범죄자가 학교에 취업한다, 감염인의 피를 수혈받는다. 모두 오염과 침입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믿는 것이 "동성애가 확산된다"(44.1%)였고, 화장실 문항은 여성(34.9%)이 남성(33.2%)보다 조금 더 믿었습니다. 청년 남성의 능력주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두 가지는 배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능력주의는 상대를 같은 경기장 안에 두고 아래로 보냅니다. 적어도 경쟁 상대, 곧 한 사람의 주체로는 인정하는 셈입니다. 오염의 서사는 상대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할 위험물로 취급합니다. 발제자는 민주주의가 데모스, 곧 인민의 평등을 전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소수자에게는 그 앞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데모스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성조는 박사논문 『퀴어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인민의 성적 경계 위에서 작동하며 그 경계가 곧 투쟁의 대상이라고 썼습니다. 능력주의가 데모스 안의 서열을 정당화한다면, 반젠더 정치는 데모스의 경계를 긋습니다.

제가 친구사이에서 마주하는 청년 세대의 혐오는 이 둘이 반반입니다. "너희만 힘드냐"는 말과 "동성애에 감염된다"는 말을 비슷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통합니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택이고 치료할 수 있다"는 오래된 주장이 그 통로입니다. 선택이라면 본인 책임이고, 본인 책임이라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오염의 서사가 자기책임이라는 능력주의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설명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발제자는 과잉 능력주의가 결국 우생학, 곧 열등한 존재를 솎아내야 한다는 사상에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서열의 논리가 오염과 순수의 논리로 넘어가는 지점을 짚으신 것으로 읽었습니다. 다만 동성애혐오가 말하는 오염은 '열등함'보다 '병리의 전염'에 가깝고,

그 출처는 능력 담론보다 종교와 가족과 안보 담론입니다. 발제자가 보시기에 이것도 능력주의의 연장인지, 아니면 능력주의와 맞물린 별개의 축인지 듣고 싶습니다.

4. 혐오는 어떻게 닿는가

지금까지는 혐오가 '무엇을 말하는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닿는가'를 보태고 싶습니다.

발제자는 혐오표현이 극우 정치의 타자화를 일상의 말로 '번역'하고, 그렇게 일상이 된 혐오표현이 다시 극우 정치를 키우는 순환 구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만의 에너지를 극우가 자기 기반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번역과 전환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희만 힘드냐"도, "동성애에 감염된다"도 누군가 만들어서 실어 날라야 사람에게 닿습니다. 능력주의의 혐오든 오염의 혐오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어떤 채널로 오는가. 어떤 형식으로 오는가. 누가 전하는가. 누가 돈을 대는가.

채널부터 보겠습니다. 『극우리포트』는 오늘의 극우 유튜브를 새로운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길러 낸 '인터넷 사역자'들이 포털 댓글과 단체 대화방에서 하던 일이 플랫폼을 옮긴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짧은 영상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김경내 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 가짜뉴스를 접한 경로는 유튜브(20.1%), SNS(18.6%), 온라인 커뮤니티(17.8%)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콘텐츠를 한 종류도 보지 않은 사람의 믿음 지수는 4점 만점에 1.99점인데, 세 종류를 본 사람은 2.79점이었습니다. 혐오는 형식도 갈아입습니다. 설교였던 것이 카드뉴스가 되고, 1분짜리 영상이 되고, 농담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간은 사람입니다. 같은 조사의 회귀분석에서 믿음을 가장 크게 끌어올린 것은 유튜브(0.274)가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서 들은 경우(0.415)였습니다. 영상이 만든 말이 식탁과 단체 대화방에서 아는 사람의 입을 거쳐 완성됩니다. 반대로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낮았습니다(-0.205). 닿는 길이 사람이라면 막는 길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유럽의회 의원 포럼(EPF)이 2025년에 낸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유럽에서 반젠더 활동을 하는 275개 단체에 약 11억 8천만 달러가 흘러 들어갔다고 집계했습니다. 그 앞 10년 전체가 7억 700만 달러였으니, 절반의 기간에 그보다 많은 돈이 움직인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나온 돈이 2억 1천만 달러, 미국 기독교 우파에서 나온 돈이 1억 달러를 넘습니다. 국경을 넘어 각 나라의 극우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이 있고, 전략과 구호가 그 길을 따라 함께 움직

입니다. 혐오는 여론이기 전에 산업이고, 투자처입니다.
발제자의 능력주의 분석이 혐오의 문법을 밝혀 준다면, 저는 그 문법으로 쓰인 메시지의 유통망을 함께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이념만 비판해서는 채널과 사람과 돈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5. '상징적 방지턱'을 이어서

발제자는 혐오표현을 강하게 규제한 유럽도, 규제하지 않은 미국도 극우의 약진을 막지 못했으니 처벌을 둘러싼 논쟁에 사회적 비용을 지나치게 쓰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처벌의 힘보다 상징적·문화적 차원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회 전반에 놓이는 '상징적 방지턱'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일본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경찰과 법원의 태도를 바꾸고 민사재판의 해석 기준이 된 것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법은 애초에 혐오표현 처벌법이 아니라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에서 일어난 차별을 구제하는 법입니다. "설교하면 처벌받는다"는 반대 측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처벌 논쟁에 갇히지 말자는 제안은 그 점에서 제게도 힘이 됩니다. 다만 한국은 규제를 해 본 유럽도, 원칙에 따라 하지 않은 미국도 아니고, 20년 동안 결정 자체를 미뤄 온 사회라는 점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방지턱의 비유에 두 가지를 보태겠습니다.
하나는 방지턱이 놓이는 자리입니다. 일본의 그 법은 보호 대상을 '본방 외 출신자'로 한정했습니다. 성소수자도 장애인도 그 법 안에 없습니다. 한국은 2007년에 7개 사유를 덜어낸 경험이 있고, 장예정 위원장 발제대로 최근 정보통신망법의 혐오 관련 조항에도 성적지향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지턱이 일부 구간에만 놓이면, 놓이지 않은 구간은 달려도 되는 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모스의 경계가 법조문에 그대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법 이름의 '포괄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지턱이 놓인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입니다. 한국의 극우는 이 법을 막으면서 조직을 만들고 이겨 본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정은 그 승리의 연쇄가 처음으로 끊기는 일입니다. 발제자가 말씀하신 상징적 효과의 가장 큰 몫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가 20년 동안 혐오세력에게 내주었던 거부권을 되찾아 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6. 맺으며

발제자는 세계가치관조사에서 한국이 '소득은 더 차이 나야 한다'는 응답이 64.8%에 이르는, 불평

등 선호가 예외적으로 높은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요구가 20년 동안 꺾이지 않은 것이 놀랍고, 한국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보여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반가웠습니다.

다만 저는 그 20년을 활동가와 시민 개개인의 열정만으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요구해 온 사람들은 혐오의 메시지가 이 사회에서 극우를 재생산하는 토대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을 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수개신교의 20년이 그 판단의 근거였고, 12·3 내란이 그 판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진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자료에서 동성애가 확산된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66.1%가 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혐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평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두 힘드니 공평하다"는 감정에, 능력주의를 오래 비판해 오신 발제자께서는 평등의 언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혐오가 그랬듯 그 언어도 채널과 사람을 타야 닿을 텐데, 짧은 영상과 단체 대화방과 식탁에서 평등은 어떤 모양으로 말해져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겨울 광장에는 무지개 깃발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는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극우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면, 그 불만에 평등으로 답하는 것은 정치의 몫입니다. 22대 국회에 올라온 세 개의 법안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중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극우리포트: 성소수자 혐오부터 내란옹호까지』, 2025.
- 정성조, 『퀴어 민주주의: 한국 성소수자 운동과 반젠더 정치의 헤게모니 투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 European Parliamentary Forum fo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EPF), The Next Wave: How Religious Extremism Is Reclaiming Power, 2025.
- 김경내, 「청년세대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 본 토론회 발표자료.
- 장예정, 「혐오 대응과 차별금지법」, 본 토론회 발제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확산과 평등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Ⅰ. 혐오표현 대응을 개별 발언의 문제로 축소하는 규제의 한계

혐오표현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어나 개인의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집단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외교적 관계에 대한 비판을 넘어 중국인이라는 특정 국적과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자체를 공격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5년 확산된 혐중 시위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이나 아웃' 등의 구호와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하였으며, 명동과 건대입구, 대림동 등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계 이주민의 활동이 많은 지역이 시위의 표적이 되었다. 특히 대림동과 같은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혐오 시위는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이주민들에게 일상적인 공포와 위축을 초래한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추상적인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이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공간을 위협하고 배제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오늘날 혐오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서로를 증폭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오프라인 집회에서 사용된 혐오표현은 영상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온라인에서 형성·강화된 적대감은 다시 오프라인 집회와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배제가 마치 정당한 정치적 의견인 것처럼 정상화된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개별 발언의 적절성을 판단하거나 특정 집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혐오가 발생하고 확산되며 실제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구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Ⅱ.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가지는 확산성과 증폭성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확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주체는 정치인과 공적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반 시민의 발언과 동일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정치인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인이 특정 이주민 집단을 사회적 부담이나 위험으로 묘사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편견은 공적인 판단과 정책의 근거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근 고위 정치인들의 이주민 관련 발언과 대통령의 다문화 역차별 논란은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임금 송금 문제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 등을 다루면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인지 따지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은 모자보건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책을 역차별의 문제로 제기하면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이주민이 국민의 몫을 가져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물론 정부 정책은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주민 관련 정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하는 것과 특정 집단을 특혜를 받는 집단으로 낙인찍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명분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거나 그 집단의 권리 보장을 문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적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역차별' 논란이 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공통의 합의된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기 쉽다.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발화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매체의 파급력, 차별적 목적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입법화함으로써, 정치인의 발언이 단순한 정책적 견해 표명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Ⅲ. 혐오표현 대응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렇다면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비롯한 다양한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형사처벌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혐오표현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민사적 구제, 행정적 규제, 피해자 지원, 교육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며, 형

사처벌은 폭력이나 범죄행위를 선동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규제,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영향력 있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송·언론·미디어에 대한 심의와 중재, 피해자에 대한 상담·통역·진정 및 소송 지원, 시민교육과 인권활동 지원 등이 가능하다.

한국은 현재 성차별, 연령차별 등 몇가지 요소에 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인종차별을 또다른 개별법으로 추가하는 방식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인종차별이라는 하나의 영역에 한정하여 대응해서는 안 된다. 혐중 시위를 주도하였던 극우세력은 과거부터 성소수자 혐오와 이슬람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온 집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뿐 아니라 성소수자, 무슬림 등 다양한 소수자를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는 혐오와 차별이 개별 집단에 대한 독립적인 편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만 대응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정책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주민과 외국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과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차별 사유를 포괄하는 평등정책의 기본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차별을 금지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법률이 아니다. 차별의 개념과 금지되는 차별 사유 및 영역을 명확히 하고, 차별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국가가 평등 실현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평등의 기본법이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넘어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무를 제도화할 수 있다.

특히 혐오표현이 실제 차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이를 개별적인 형사사건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 침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Ⅳ. 평등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국가가 혐오표현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치적 반대 의견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

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되는 기구를 설치하되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판단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표현의 맥락과 발화자의 영향력, 차별적 목적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표현의 자유가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가 공공장소에서 모욕과 위협을 감내해야 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며, 일상적인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특정한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사회 전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도 결국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동일한 원칙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혐오표현과 차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차별을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국가의 평등 실현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할 기본적인 법적 기반이다.

혐오와 차별이 특정 집단을 넘어 서로 연결되고 확산되는 지금,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평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김경내, "청년세대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 토론: 개신교 청년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정경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전 집행위원장

한국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가 시작된 지 어느덧 이십 년이 되어 갑니다. 2007년 법무부가 처음 정부안을 내놓은 뒤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일부 보수 개신교의 조직적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보수 개신교의 반대가 실제로 법 제정을 가로막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 데에는 정부와 정당의 지속적 회피가 있었습니다. 회피의 이유는 '선거 공학'이고, 명분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상된 공포이며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정당들은 소선거구제 구조상 개신교의 집단적 선택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믿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는 없습니다. 반공, 반동성애, 반이슬람을 내건 기독교 정당은 지난 세 번의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개신교인이 지지 정당을 선택할 때 반동성애가 결정적 기준이 된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개신교인의 찬반 역시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다. 이번 〈진보정책연구원〉 조사에서 개신교인 청년의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는 41.9%, 비지지는 45.6%로 비슷했고, 다른 조사에서는 오히려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공공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합으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이 제시된 적도 '합의'된 적도 없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만장일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준과 방식과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와 정당의 공적 책임일 것입니다.

〈진보정책연구원〉의 이번 조사와 이에 대한 김경내 선생님의 분석은 차별금지법 관련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정치, 종교, 시민사회의 과제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보수 개신교가 차별금

지법 제정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저는 개신교인 청년의 인식에 관한 몇 가지 성찰과 실천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체적으로 개신교인 청년 집단의 상대적 보수성을 보여 주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 청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는 27.3%에 그쳤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는 41.9%였습니다. 또 종교별로 보면 '가짜뉴스'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은 집단이 개신교(통합지수 평균 2.59)였는데도, 개신교 응답자의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와 비지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조사들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2026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개신교인-비개신교인 비교 인식조사(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개신교인의 26.8%가 동의하고 43.5%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거꾸로 43.2%가 동의하고 29.8%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동성애는 죄라는 보수 개신교의 주장에 '신자'로서는 동의하면서도, 어떤 집단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시민'으로서는 동의하는 개신교인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실천적 함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설득력 있게 알리는 데 더 주력하여 개신교인의 '시민성'을 심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성'에 기초한 혐오를 환대로 바꾸어 가는 일은 개신교인 앨라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둘째, 〈진보정책연구원〉 조사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가짜뉴스를 믿는 정도가 가족·지인과의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청년 전체에 해당하는 결과이지만, 가족과 교우 관계가 교회 공동체와 겹쳐 있는 개신교 청년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개신교 청년의 인식은 교회 목회자의 일방적 주장만이 아니라, 그 주장이 가족과 지인 사이에서 공유되는 관계 속에서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관계망이 혐오를 퍼뜨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동시에 반차별·반혐오 인식 또한 같은 통로를 통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응답자가 다섯 가지 가짜뉴스를 모두 덜 믿었다는 결과가 이를 시사합니

다.

그런 점에서 "판단유보층(17.3%)의 생활에도 닿을 수 있는 설명과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김경내 선생님의 제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신교인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교회와 사회의 사적, 공적 관계망에 들어가 소통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이하 평등세상)가 함께 진행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차별금지법 대화모임—평등잇수다'가 그 한 교회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토론처럼 성소수자 환대를 위한 소통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 당사자, 부모모임 등 가족, 앨라이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청년과 무종교 청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주장(두 배 이상)이었고, 화장실·학교의 안전에 관한 주장도 20%p 가까이 더 많이 믿었습니다. 이는 개인적, 공동체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포위된 정체성'의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상된 공포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은 차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를 구제하는 법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주는 과제는, 구조적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바로잡을 공론장을 교회 안팎에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설교·교리교육·종교의례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교회, 단체, 개인이 함께하는 평등세상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태 왔습니다. 평등세상은 차제연과 함께 "차별금지법 '진짜' 바로 알기"를 진행했고,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를 공동으로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또 교회 안팎의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 '평등잇수다'를 열며 여러 교회, 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개신교를 부정하거나 위협하는 법이 아니라, 개신교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 개신교인으로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해 온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고, 해야 할 일을 다 해 오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

서 다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신 손솔(진보당), 정춘생(조국혁신당), 박주민(더불어민중당) 세 의원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청회와 심사 일정을 공개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사회적 합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실질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은 혐오가 아닌 사랑임을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도 민주사회의 신자-시민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 하겠습니다.